■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79-487.
http://doi.org/10.17948/kcs.2021..92.479

『악원고사(樂院故事)』 해제

송지원(宋芝媛)*

1.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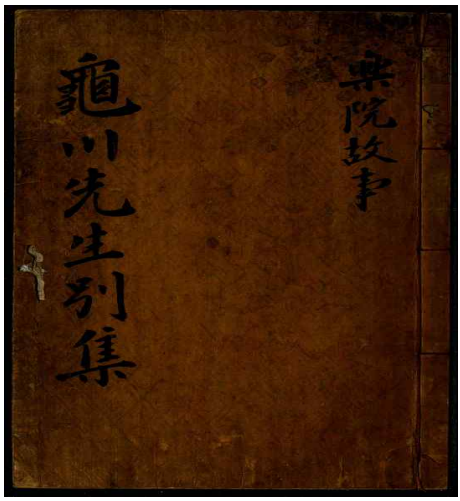
- 작성주체: 이세필(李世弼, 1642-1718) 찬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 : 四周雙邊 半郭 21.6 x 15.4cm, 烏絲欄,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0.5 X 20.5cm
- 주기사항: 卷首題: 龜川先生別集
- 備考: 龜川先生別集 內에서 別出한 것임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8.25a

2. 안내정보

1696년(숙종22)에 장악원정(掌樂院正) 구천(龜川) 이세필(李世弼)(1642-1718)이 종묘제례의 각 절차에 사용하는 악장(樂章)을 모아 주설(註說)을 붙이고, 종묘악장과 관련된 논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으고 자신이 미처 올리지 못한 소(疏)를 덧붙여 필사본으로 펴낸 책이다.

* 서울대 국악과 비전임교수.

3. 편저자사항



〈그림 1〉『악원고사』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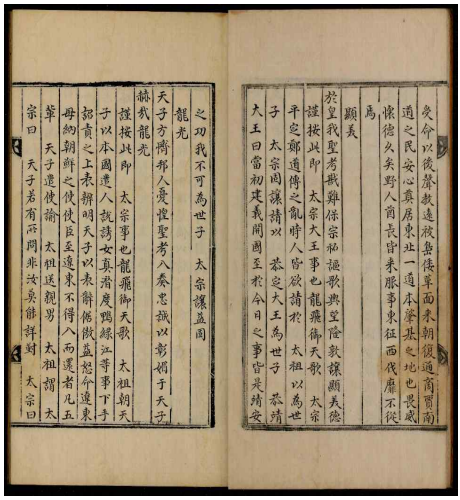
편자 이세필의 자는 군보(君輔), 호는 구천(龜川),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며, 이조참판 이시술(李時術)의 아들이다. 송시열·박세채의 문하로서 특히 예학에 밝았으며 효행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74년(현종15) 제2차 복상(服喪) 문제로 인해 송시열이 삭직 당하자 여러 유생들에게 통문을 돌리고 상소한 일과 관련, 영광에 유배되었다가 1678년(숙종4) 풀려났다. 이후 1680년(숙종6)에는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가 그 이듬해에 동몽교관이 되었다. 1684년(숙종10)에는 형조좌랑을 역임했다. 1689년(숙종15)의 기사환국(己巳換局) 당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로부터 출향(黜享)하려 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1694년(숙종20)에 김제군수에 이어 사복시정 및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이후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형조참판 등을 제수 받았지만 역시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만년에는 특히 예학(禮學)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세필이 『악원고사』를 저술하게 된 것은 그가 장악원정이 되어 종묘제례에서 연주하는 악장(樂章)의 내용을 살피면서이다. 당시 종묘제례에서 연주하는 악장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자 그 논의들을 모으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1696년에 책을 완성한 것이다. 『악원고사』의 완성은 그의 예학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술에는 경설(經說)과 예학(禮學)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논변경설(論辯經說)』, 『답문

의례(答問疑禮)』, 『동호예설(桐湖禮說)』 등이 있다.

4. 구성 및 내용



〈그림 2〉『악원고사』 본문

본서는 1책 39장으로 상편(上篇)과 하편(下篇)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 항관(行款)은 10행(行), 20자(字)로 되어 있다. 판심(版心)은 이엽화문어미(二葉花紋魚尾), 판심제(版心題)는 없다. 본문의 목차는 없고, 1장-a면부터 '종묘・영녕전악장주설(宗廟・永寧殿樂章註說)'이란 제목으로 상편이 시작되어 12-a면까지 이어지며, 12-a면부터 하편이 시작되어 39-a면까지 이어진다. 3-a면 7행에는 보태평 11성 악장의 하나인 '융화(隆化)'의 제목이 빠져 있어 필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용으로 보아 하편의 34-b면부터 35-a면 사이에 있는 이세필의 상소 제목이 빠져 있고 내용에 결락(缺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편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上篇
宗廟・永寧殿樂章註說
迎神
奠幣
進饌
初獻　保太平十一聲(熙文・基命・歸仁・亨嘉・輯寧・隆化・顯美・龍光・貞明

・大猷・繹成)

亞獻 定大業十一聲(昭武・篤慶・濯征・宣威・神定・奮雄・順應・寵綏・靖世・赫整・重光・永觀)

徹籩豆

送神

下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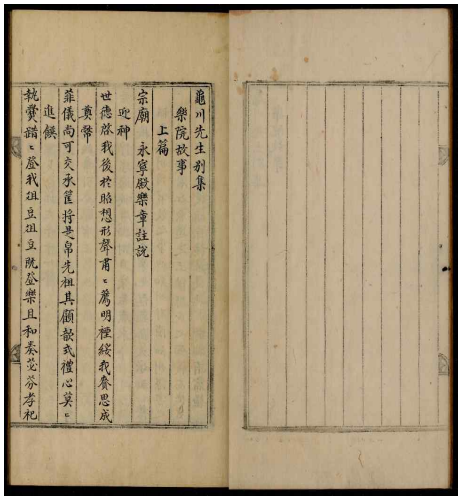
禮曺天啓丙寅啓辭

禮曺辛卯啓辭

禮曺乙巳啓辭

禮曺丙子啓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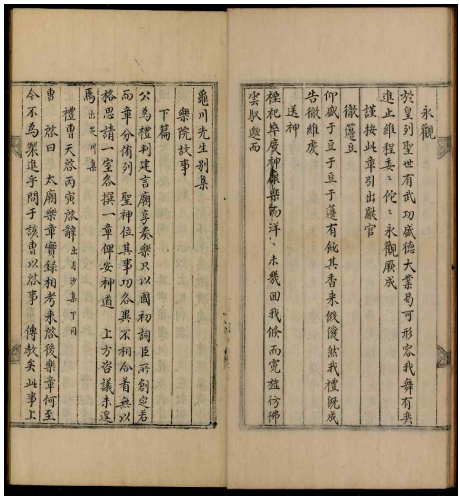
위의 구성에서 보이듯『악원고사』의 상편에는 종묘제례를 지낼 때 의례의 절차, 즉 영신, 전폐,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철변두, 송신례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는 악장을 순서대로 모아 놓았다. 위의 목록에서 종헌(終獻)의 절차에서 쓰이는 악장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헌례 때에 사용하는 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이처럼 종묘제례의 각 절차에 쓰이는 악장 내용을 적은 후 초헌 및 아헌례 때에 사용하는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의 각 악장 내용을 분석하여 각각 누구를, 혹은 무엇을 위한 악장인지 주(註)를 붙여 낱낱이 설명해 놓았다. 문덕(文德)을 칭송하는 내용의 보태평에 속하는 기명(基命)은 목조(穆祖)를 위한 악장, 귀인은 익조(翼祖), 형가는 익조・도조(度祖), 집녕은 환조(桓祖), 융화는 태조(太祖), 현미와 용광은 태종(太宗), 정명은 원경왕후(元敬王后)를 위한 악장, 대유는 열성의 문덕(文德)을 칭송하는 악장, 역성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나가는 악장임을 설명하였다. 또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내용의 정대업에 속하는 소무는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일 때 쓰는 악장임을, 독경은 목조를 위한 악장, 탁정은 환조, 선위, 신정, 분웅, 순응, 총수는 태조, 정세와 혁정은 태종, 중광은 선조를 위한 악장, 영관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는 악장임을 설명하였다.


龜川先生別集
樂院故事
上篇
宗廟 永寧殿樂章註說
迎神
世德旣我後於胳想形聲甫。爲明禋緩我奏思成
奠幣
菲儀尙可矣永崖持典帛先祖其顧歆式禮心莫。
進饌
抗聲謳。盛我祖豆祖豆既潔且和奏觜爾考祀

〈그림 3〉『악원고사』 상편

12-a면에서 시작되는 하편은 황정욱(黃廷彧)이 예조판서로 있을 때 종묘 악장에 관하여 건의한 내용으로 시작된다. 황정욱의 건의는 종묘에 제향할 때 각 세실(世室)에서 연주하는 악장의 내용이 왕의 공적과 같지 않으니 종묘 각 실에 각각 한 악장씩을 지어 혼령을 편안케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예조(禮曹)가 종묘악장에 관해 논한 세 편의 계사(啓辭)를 수록하였다. 이는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월사집(月沙集)』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정구는 황정욱의 건의와는 다른 견해이다. 월사는 성종 말년에 이루어진 『악학궤범』에 세종 이상의 묘악만이 실려있고 문종, 세조, 예종 이하의 묘악이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 "묘악이란 가장 높은 이를 따르므로 태조와 태종의 공덕만 찬양하고 그 이하는 따로 악장을 지어 각 실에 통용한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묘(宣廟)의 경우 광국중흥(光國中興)의 공이 있는데 별도의 악장이 없는 점을 지적하여, "공이 큰 왕에 대하여는 따로 악장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정구는 결국 선묘에 대한 악장을 짓는다. 이어지는 부분은 1651년(효종 9) 9월의 장악원정(掌樂院正) 권우(權堣, 1610-1685)의 상소(上疏)로, 종묘악장의 가사책에 음을 해석한 인본(印本)을 보니 잘못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수리(受釐)의 '리(釐)' 자는 『시경』 소아편 및 강목(綱目)에 모두 '희(禧)'로 음을 내었는데, 중광곡의 '수리계후(受釐啓後)'의 '리(釐)'는 곧 '니(尼)'로 해석하였으니, '희'와 '니' 두 음은 뜻이 현격히 다르니 이는 필시 간행할 때 잘못된 것을 방과해서일 것이라 지적하였다. '산융(山戎)'의 '융(戎)'자를 '용(容)'으로 해석하거나, '숙아(孰我)'의

'숙(孰)'자를 '수(收)'로, '총수(寵綏)'의 '수(綏)'자를 '요(要)'로 해석하였고, '호장용영(壺漿用迎)'의 '영(迎)'자는 '연(延)'으로 해석하는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어지는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차자(箚子)에서는 종묘악장에서 선왕의 덕을 칭송하는 악장이 세종대에 그친 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즉 세조, 성종, 중종, 인종, 효종의 묘실에 악장을 별도로 짓지 않는 점, 악장의 길이가 균등하지 못한 점, 선조의 묘실에만 두 악장을 쓰는 점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봉징(李鳳徵, 1640-1705)의 소(疏)에서는 종묘 각실(各室)에서 연주하는 악장의 내용이 맞지 않는 이유는 각실이 조천(祧遷)된 후에도 악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부묘(祔廟) 후에도 새로운 악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적과 함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세필의 소는 인입(引入), 인출장(引出章)을 제외하고 9장을 사용하는 것이 『주례(周禮)』 9변(變)의 의미와 맞으니 새롭게 악장을 제작할 필요는 없으나 내용에 따라 악장의 길이와 차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세필의 상소는 초고(草稿)를 짓고 미처 올리지 못했다.



〈그림 4〉『악원고사』 하편

5. 서지적 가치

표지 서명은 왼쪽에 『구천선생별집(龜川先生別集)』이라 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 『악원고사(樂院故事)』라 적혀 있어 1696년(숙종22)에 편찬한 『악원고사』를 후일 이세필의 문집을 만들면서 별집으로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

다. 권수제(卷首題)는 표지 서명과 일치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악원고사』(奎11503)는 필사기가 1696년(丙子)으로 되어 있으나 『구천선생별집』에 포함된 『악원고사』는 이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말미에 1737년(영조 13) 10월의 일을 부기(附記)한 것으로 보아 본서의 필사가 규장각본보다 적어도 41년 뒤인 1737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규장각본의 후사본임을 알 수 있다. 본서를 규장각 소장본 『악원고사』와 비교해 본 결과 규장각본에 '의상소초(擬上疏草)'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세필의 소(疏) 앞부분 내용이 빠져 있음이 확인된다.

규장각본 『악원고사』는 본서와 달리 앞부분에 목록이 있다. 목록은 상편이 樂章註說, 하편이 芝川集一段, 月沙集啓辭三, 權堣疏(大臣收議附), 宋同春箚子(大臣收議附), 李鳳徵疏(大臣箚子收議附), 擬上疏草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 상편과 본서 상편을 비교해 보면 내용은 거의 같으나 본서 3-a면 7행에 있어야 할 보태평 악장의 하나인 융화(隆化)가 필사 과정에서 빠져 있음이 확인된다.

규장각본 하편의 '芝川集一段'은 본서 하편의 가장 앞부분 4행(12-a)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규장각본 '月沙集啓辭三'은 본서의 '禮曺天啓丙寅啓辭'(12-a부터 16-b)와 '禮曺辛卯啓辭'(16-b부터 21-a)에 해당하며 규장각본 '宋同春箚子(大臣收議附)'는 본서의 '禮曺乙巳啓辭'(21-a부터 26-a)에, 규장각본 '李鳳徵疏'(大臣箚子收議附)는 본서의 '禮曺丙子啓辭'(26-a부터 34-b), 규장각본 '擬上疏草'는 본서 35-a부터 37-b까지의 내용에 해당한다. 규장각본은 책의 끝부분에 '歲丙子重五日李世弼書'라고 필사 시기를 기록해 놓아 책이 1696년(숙종 22)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후사본인 본서에는 필사 시기를 기록한 부분은 삭제하고 1737년(영조 13)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이루어진 논의에 대해 추가 기록해 놓았다. 이로써 본서의 필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적어도 1737년 10월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10월 20일의 기록은 대신(大臣)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했을 때 공조참판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이 영조에게 건의한 것으로 『악원고사』를 대신 및 장악원 제거로 하여금 강구(講究)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21일의 기록은 주강(晝講)을 행할 때 지경연사(知經筵事) 윤순(尹淳)이 영조에게 아뢴 것으로 『악원고사』가 틀린 글자가 많아 고

치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다.

6. 내용적 가치

본서는 17세기에 이루어진 종묘악장 논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은 것이다. 『악원고사』가 이루어지던 17세기 후반에는 종묘가 11실(室)을 이루게 되는 무렵으로, 11실이란 숫자는 종묘제례의 보태평과 정대업의 곡수인 11성(聲)과 일치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무렵에 종묘 각 실에 걸맞는 내용의 악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논의가 가시화 된 것이었다. 당시에 제기되는 종묘악장 논의 가운데 하나는 '종묘 각 실에 각각 한 악장을 갖추어 연주해야 한다'는 설이었고, 또 하나는 '악(樂)이 9변(變)하면 인귀(人鬼)에 예를 올릴 수 있다'는 『주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9성 타당설'이었다. 전자는 황정욱, 오윤겸, 송준길 등에 의해 제기되었고 후자는 이정구, 남구만, 이여 등의 설을 따른 것이었다. 결국 17세기에 이루어진 종묘악장 논쟁은 영조대까지 이어졌고 영조대의 종묘제례 악장은 용광장과 정명장을 합하여 용광정명(龍光貞明)의 1장으로 만들고 9장을 12실에 계속하여 연주하는 전통으로 귀결되었다. 본서는 17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종묘 악장 논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 놓은 자료집으로서 17세기 명신들이 어떠한 입장과 전거(典據)로 종묘악장 논의를 펼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종묘악장의 역사적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참고문헌

송지원, 「『악원고사』를 통해 본 17세기 종묘악장 논의」, 『문헌과 해석』 15, 문헌과해석사, 2001.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 학술총서 6 역주 악원고사』, 민속원, 2006.